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주배경학생 통번역 지원 및
가해자 조치별 적용 기준 마련 시 학교 특수성 고려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8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이주배경학생 통번역 지원	3
2. 가해자 조치별 적용 기준 마련 시 학교 특수성 고려	12
 [참고자료] 이주배경자녀 학교 부적응 이유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 통계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14.

3. 회부연월일 : 2026. 5.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한 조력인을 지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 등의 이주배경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과거 살았던 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사건에서 학생의 진술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재외국민의 학교교육을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와 같이 현지 법령 체계, 지리적 여건, 인프라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하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객관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이주배경학생 통번역 지원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의 조력 범위에 통번역을 명시하고, 피·가해학생 중 다문화학생 또는 외국인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과정에 통번역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u>보호</u>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u><신설></u>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 ----- ----- <u>보호, 통</u> <u>역 및 번역</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5(외국인학생 등에 대한 통</u> <u>역 및 번역 지원)</u> ① 교육감 및 <u>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u> <u>생이 외국인학생, 「다문화가족지</u> <u>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u> <u>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이하 “외</u> <u>국인학생등”이라 한다)인 경우 학</u>

교폭력 사안의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외국인학생등인 경우 심의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재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는 현행법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⑪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척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 ⑤ (생략)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 ② (생략)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 ⑨ (생략)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행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크게 ①학교폭력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②사안조사, ③교내 전담기구 심의, ④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⑤피·가해학생 보호·선도 조치 이행 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자료: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지침)」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진학
 9. 퇴학처분
- ② ~ ⑰ (생략)

□ 또한, 현행법²⁾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가해학생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아동심리·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②법률·상담·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③법률지원 등 보호 및 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 최근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에서 2025년 5월에 발표한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8.4%가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1.9%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남.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 및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최근 5년간 이주배경 학생 현황]

(단위: 명 / 매년 4.1. 기준)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5,323,075	5,275,054	5,209,029	5,132,180	5,015,310
이주 배경	소계		160,058 (3%)	168,645 (3.2%)	181,178 (3.5%)	193,814 (3.8%)	202,208* (4.0%)
	국제 결혼 가정	국내 출생	122,095	126,029	129,910	134,817	136,592
		중도 입국	9,427	9,938	10,896	11,987	12,740
	외국인 가정		28,536	32,678	40,372	47,010	52,876

*초·중·고·각종학교

** 자료: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 그런데 이와 같이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배경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도 한국어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통번역 지원이 법률이 아닌 교육부 지침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³⁾에 근거하여 안내 및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통번역을 위해서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학교폭력 사안처리 전과정에서 통번역을 지원하며, ③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통·번역인의 출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통번역 지원을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학생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3)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지침)」, p. 84, 109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6조의3제1항은 조력인의 사무에 통·번역을 추가하려는 것이나,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사무와 통·번역은 서로 다른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 영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까지 고려할 때 조력인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안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통·번역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주배경학생의 지원**

[사안 접수 및 조사 단계]

- 모국어나 한국어 이해 수준에 맞추어 통역·번역을 지원한다.
-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이로 인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한다.
- 문화의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시 신뢰관계가 있는 보호자, 담당 교사 등을 참여시켜 학생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다.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 시 인종, 문화, 종교 등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한다.
- 이주배경 전문가가 진술조력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주배경학생·북한배경학생의 보호 및 지원**

- 이주배경학생과 북한배경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주배경학생과 북한배경학생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초기대응, 사안조사 등 사안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배경학생, 북한배경학생의 경우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이주배경학생, 북한배경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를 참여시켜 이주배경학생과 북한배경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 피해학생이 이주배경학생 또는 북한배경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이주배경학생 또는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안의 통번역 지원 및 조력인 지정 제도 비교]

구분	통번역 지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근거 규정	안 제16조의5제1항	안 제16조의3제1항
지원 목적·내용	통·번역	
지원 주체	직접 지원 (교육감 및 교육장)	간접 지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지정한 조력인)
지원 대상	피해학생, 가해학생	피해학생

둘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통·번역인의 출석의 경우에도 유사 취지의 제도들과 같이 피·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이를 의무화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통·번역인의 출석의 경우 유사 제도들⁴⁾과 달리 심의위원회의 재량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및 피·가해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피·가해학생 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통·번역인의 출석을 의무화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관련 규정> : 이견없음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서비스 및 지원기관의 연계 범위에 ‘법률, 상담, 보호’ 외에 추가로 ‘통역 및 번역’을 신설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외국인 및 이주배경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임

<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한 통·번역 지원 규정 > : 이견없음

- 가·피해학생이 외국인학생, 다문화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위해 통역 및 번역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함

○ 시·도교육청(경기)

-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상담 및 처리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권리 보장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2. 가해자 조치별 적용 기준 마련 시 학교 특수성 고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마련 시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 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 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 ----- ----- ----- ----- ----- ----- ----- <u>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 -- . ----- ----- -----.
1. ~ 9. (생략) ② ~ ⑱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⑱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7조제1항⁵⁾ 및 시행령 제19조⁶⁾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종류 및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종류 및 각 조치별 적용 기준 고려사항]

구분	내용	비고
가해학생 조치	1.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별 적용 기준 고려사항	1.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 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 14조 제 5항에 따라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1~3점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2호	피 해 학 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 복 행 위 의 금지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교육 또는 심리 치료	가해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8호	전학	16~20점						
		교외 9호	퇴학처분	16~20점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8. 전학

9. 퇴학처분

② ~ ⑰ (생략)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그런데 해당 기준이 현행법 적용 대상인 학교⁷⁾ 모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해학생 조치 수준에 관한 적용 기준을 정할 때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개정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개정 취지에 맞춰 법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외국의 한국학교를 예시로 들면서 물리적으로 가해자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조치를 하기 위함을 그 개정 취지로 밝히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 법문은 개정 취지인 대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으면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수준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만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취지와 전혀 다른 입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 취지의 경우에도 가해자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①문언 그대로 물리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인지, ②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국내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등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지 그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예시로 제시된 외국의 한국학교의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의2 · 1의3 (생략)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 5. (생략)

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중 한국학교⁸⁾로 본다면 해당 학교는 물리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는 점에서도 개정 취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교육기관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여부]

구분	학교	법적 근거
적용	일반 초·중고	「초·중등교육법」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미적용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편, 개정문 기준으로 본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에 대해서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가해학생 조치 수준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학교폭력의 양태 및 비난가능성 등 이외에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동종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 학교별로 제재 수준이 달라 질 수 있음에 따라 제재 처분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

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 5. (생 략)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개정안은 재외 한국학교가 학교폭력예방방법의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그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을 논의하려면 재외 한국학교를 학교폭력예방방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 인지가 선결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한국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소재국의 문화 및 교육적 철학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시·도교육청(경기)

- 가해학생에 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문 의 처

02) 6788-5187

참고 1

이주배경자녀 학교 부적응 이유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 통계

〈표 V-27〉 [자녀] 학교 부적응 이유(복수응답)

(단위: %, 명)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교사의 차별대우 때문에	부모의 관심과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서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기타
전체 (2021)		56.2	6.5	55.4	1.2	6.5	2.7	8.4
전체 (2024)		51.1 (1,191)	8.4 (195)	62.8 (1,462)	-	23.2 (539)	7.0 (163)	9.0 (210)
성별	여성	55.0	9.8	65.7	-	12.8	9.0	15.1
	남성	47.8	7.2	60.4	-	31.8	5.3	3.9
연령	9~11세	40.2	17.0	63.1	-	23.2	19.9	5.4
	12~14세	51.6	4.2	82.6	-	25.5	0.5	0.0
	15~17세	55.6	10.7	45.7	-	19.9	1.5	15.2
	18세 이상	53.1	0.0	59.8	-	26.3	20.6	20.1
재학상태	초등학교 재학	31.7	14.1	75.7	-	35.8	12.5	3.4
	중학교 재학	60.4	9.5	71.1	-	9.2	0.8	12.3
	고등학교 재학	67.9	0.0	27.8	-	24.4	13.9	2.2
	대학 이상 재학	9.1	0.0	60.8	-	71.1	0.0	44.2
성장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49.8	4.5	64.3	-	24.9	7.5	9.1
	외국 거주 경험	30.9	2.0	98.0	-	0.0	0.0	19.9
	외국에서 주로 성장	92.5	100.0	7.5	-	0.0	0.0	0.0
다문화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43.2	14.4	54.0	-	24.2	7.3	6.6
	기타귀화자	9.6	11.5	84.6	-	3.8	9.8	15.4
	결혼이민자·귀화자 없음	65.2	0.0	72.8	-	23.4	6.3	11.7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82.7	0.0	42.9	-	0.0	56.4	0.0
	100~200만 원 미만	56.6	0.0	85.3	-	25.1	0.0	0.0
	200~300만 원 미만	46.6	11.7	53.5	-	34.8	2.0	20.6
	300~400만 원 미만	38.7	8.7	63.9	-	0.0	27.7	12.8
	400~500만 원 미만	62.4	22.2	56.4	-	23.0	0.0	0.0
	500만 원 이상	31.4	0.0	58.4	-	14.1	7.8	9.0

주: 2021년은 초·중·고·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은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표 V-31〉 [자녀] 초·중·고 자녀의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단위: %, 명)

		있다	없다	합계
전체 (2021)		2.3	97.7	100.0
전체 (2024)		1.9 (3,132)	98.1 (158,892)	100.0 (162,024)
성별	여성	2.1	97.9	100.0
	남성	1.8	98.2	100.0
연령	9~11세	2.0	98.0	100.0
	12~14세	2.7	97.3	100.0
	15~17세	1.3	98.7	100.0
	18세 이상	0.4	99.6	100.0
재학상태	초등학교 재학	2.0	98.0	100.0
	중학교 재학	3.1	96.9	100.0
	고등학교 재학	0.4	99.6	100.0
	대학 이상 재학	-	-	-
성장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1.9	98.1	100.0
	외국 거주 경험	2.1	97.9	100.0
	외국에서 주로 성장	2.3	97.7	100.0